의안번호	제 47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10월 2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47

제출연월일 : 2018년 10월 2일
제 출 자 : 충 청 북 도 지 사

1. 제안사유

○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('18.2.28.)과 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(법률 제12687호, 2014.11.29.시행) 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

○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 용어 현행화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반영

2. 주요내용

○ 현행 조례의 용어를 일부 수정함

- '낙후지역'을 '저발전지역'으로 수정(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,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, 제6조제1항, 제12조제2항)
- '지역개발계정'을 '지역자율계정'으로 수정(안 제11조제1항제2호)
- '균형건설국장'을 '지역균형발전 업무담당 실국장'으로 수정(안 제15조제3항제1호)
- '균형개발과장'을 '업무담당 부서장'으로 수정(안 제15조제6항)
- '연구전담팀'을 '지역발전연구센터'로 '지역협력단'을 '권역별 연구팀'으로 수정(안 제18조제1항 및 제3항, 제4항)
- '낙후도'를 '지역발전도'로 수정(안 부칙 제2항)

○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13조2)

○ 연임규정 수정(안 제15조제4항)

○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함(안 제15조2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낙후지역”을 “저발전지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낙후지역”을 “저발전지역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낙후지역”을 각각 “저발전지역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낙후지역”을 “저발전지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지역개발계정”을 “지역자율계정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낙후지역”을 “저발전지역”으로 한다.

제3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5조제4항 중 “연임할수 있다”를 “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5조제3항제1항 중 ‘균형건설국장’을 ‘지역균형발전 업무담당 실국장’으로 한다.

제15조제6항 중 “균형개발과장”을 “업무담당 부서장”으로 한다.

제4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위원의 위촉 해제)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
제18조의 제목 “(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운영)”을 “(지역발전연구센터 및 권역별 연구팀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권역별 균형발전 연구전담팀(이하 “연구전담팀”이라 한다) 을”을 “지역발전연구센터(이하 “연구센터”라고 한다)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연구전담팀은”을 “연구센터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역협력단”을 “권역별 연구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”을 “지역발전연구센터 및 권역별 연구팀”으로 한다.

충청북도조례 제2998호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부칙 제2항 중 “낙후도”를 “지역발전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생략 2. “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”이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낙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. 3. “낙후지역”이란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시군을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저발전지역----------. 3. “저발전지역”----------.
제4조(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②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제4조(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) ①----------저발전지역----------. ②--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1.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	1. 저발전지역----------
2.~4. (생 략)	2.~4. (현행과 같음)
③~④ (생 략)	③~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불균형 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도내 각 시군별 지역발전도를 조사·분석하여 매 5년마다 낙후지역을 선정한다.	제6조(불균형 실태조사) ① ----------저발전지역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1조(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)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11조(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) ①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5퍼센트 이상 금액 중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	2. ----------지역자율계정----------
3.~4. (생 략)	3.~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세출예산의 차등지원)	제12조(세출예산의 차등지원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도지사는 둘 이상의 낙후지역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저발전지역----------
<신 설>	제13조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구성과 운영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1. 당연직은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2. 생략 ④ 제3항제2호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균형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.	제15조(구성과 운영) ① ~ ②(현행과 같음)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1. -- 지역균형발전 업무담당 실국장 2(현행과 같음) ④ 제3항제2호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. ⑥ ----------업무담당 부서장----------.
<신 설>	제15조2(위원의 위촉 해제)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 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.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
제18조(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운영) ① 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 제시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권역별 균형발전 연구전담팀(이하 “연구전담팀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제18조(지역발전연구센터 및 권역별 연구팀 운영) ① ----------지역발전연구센터---(이하 “연구센터”라고 한다)--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② 연구전담팀은 설치된 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하며, 권역내의 대학교수, 전문가, 공무원, 의회 의원, 주민 등 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	② 연구센터는----------.
③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수립, 추진과정, 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	③ ----------권역별 연구팀을----------.
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	④ ----------지역발전연구센터 및 권역별 연구팀----------.
부 칙	부 칙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방안에서 낙후도가 음(-)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지원되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.	② ----------지역발전도----------.

관 계 법 령 발 췌

□ 지방재정법

제9조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신설 2014.5.28.>

부칙 〈제12687. 2014.5.28〉

제4조 ② 이법 시행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.

□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0. 1. 1>

1. “지역균형발전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.
2.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"이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낙후지 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을 말한다.
3. “낙후지역”이란 도지사가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시·군을 말한다. <개정 2011. 4. 1>

제3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충청북도(이하“도”라 한다)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시·군은 도의 종합적인 시책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근 시·군과의 협력을 통하여 권역별 발전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2장 지역균형발전의 추진 등

제4조(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3. 30>

②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, 2012. 3. 30>

1.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목표에 관한 사항

2.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 기본방향

3. 지역별, 권역별 균형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「지방재정법」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, 2012. 3. 30>

④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관련 시장·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또한 수립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 <개정 2010. 1. 1, 2012. 3. 30>

제5조(시행계획 수립)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 1. 1, 2012. 3. 30>

제6조(불균형 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도내 각 시·군별 지역발전도를 조사·분석하여 매 5년마다 낙후지역을 선정한다. <개정 2010. 4. 1>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>

제7조(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투자협약제 운영) ① 중장기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장·군수의 신청을 받아 도지사와 해당 시장·군수가 재정지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협약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,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및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역균형발전사업의 지도·점검)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의거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·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3. 30>

제9조(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) ① 도지사는 연1회 이상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컨설팅을 할 수 있다.

② 평가 및 컨설팅 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우수 시·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

제10조(특별회계의 설치)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(이하 "특별회계"라 한다)를 설치·운용한다.

제11조(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)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
2.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제34조에 따른 지역개발계정 도 배정분의 5퍼센트 이상 금액 중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비 <개정 2011. 4. 1>
3.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에 수입금 <개정 2010. 1. 1, 2011. 4. 1>
4. 차입금 <개정 2010. 1. 1, 2011. 4. 1>

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비의 지출
2.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
3. 기타 균형발전 위탁 사업비의 지원
4. 예비비 등

제12조(세출예산의 차등지원) ① 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·군의 재정상황 및 제6조에 의한 불균형실태 조사결과와 제9조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,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둘 이상의 낙후지역 시·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 편성 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.<개정 2012. 3. 30>

제13조(특별회계의 관리·운용) 특별회계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 4. 1>

제4장 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등

제14조(충청북도 균형발전 위원회 설치) 지역균형발전시책 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<개정 2012. 3. 30> [전조개정 2010. 1. 1]

제15조(구성과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당연직은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
2. 위촉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2명, 충청북도정책자문단 위원 2명, 지역발전연구센터 2명,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발전전문가 등

④ 제3항제2호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다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균형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.

[본조신설 2012. 3. 30]

[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<2012. 3. 30>]

제1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2. 3. 30]

[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<2012. 3. 30>]

제17조(수당 등)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2. 3. 30]

[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<2012. 3. 30>]

제18조(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운영) ① 권역별 균형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와 정책 제시를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권역별 균형발전 연구전담팀(이하 “연구전담팀”이라 한다) 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연구전담팀은 설치된 기관의 책임연구원이 총괄 운영하며, 권역내의 대학교수, 전문가, 공무원, 의회 의원, 주민 등 균형발전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연구원 및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수립, 추진과정, 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[제15조에서 이동<2012. 3. 30>]

제5장 보 칙

제19조(준용)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집행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<개정 2012. 3. 30, 2015. 1. 1>[제16조에서 이동<2012. 3. 30>]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제17조에서 이동<2012. 3. 30>]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전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방안에서 낙후도가 음(-)인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지원되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0. 1. 1 조례 제322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4. 1 조례 제335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 3. 30 조례 제3450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 1.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